

저작권

현대사연구 저작권 이양 동의서

제 1 조 저작권 이양 후에 저자가 가지는 권리

본 논문의 번역, 원문을 대체할 정도의 축약이나 요약 등 2 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다른 간행물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 ※ 저작자 이외의 타인에게 2 차적 저작물 작성을 허용하지 않음
본 논문의 내용으로 기술된 특허, 등록상표, 독창적인 신기술, 연구기법 및 응용에 관한 권리,
그리고 기타 법으로 보장된 권리 저자가 본 논문을 교육 교재로 사용하거나 저자의 취직, 승진,
연구계획 및 연구보고서의 작성, 연구결과의 수익성·비수익성 광고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기
위한 복사 및 인쇄의 권리 저자가 출판 즉시 논문의 모든 버전(심사전, 심사후, 최종인쇄본)
혹은 일부를 영리 혹은 비영리 목적의 웹사이트 어디에나 업로드할 수 있는 권리 저자가 판매용
단행본 등 학술지 이외의 다른 매체에 재수록·재출판하기 위하여 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
사용할 권리

제 2 조 저작권 이양 후 저자가 가지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단서

제 1 조에 허용한 목적으로 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권이
현대사연구에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.

제 3 조 저작권의 소유 및 서명에 대한 단서

저자 중 제 1 저자는 나머지 공동저자를 대표하여 본 저작권 이양 동의서에 서명하여야 한다.
게재논문의 저작권이 저자가 아닌 저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저작권을 행사하는
해당기관과 단체의 저작권 담당자가 저작권 이양 동의서에 서명하여야 한다. 본 저작권이
현대사연구에 있으나 대한민국 정부 및 연구비를 지원한 기관 또는 단체가 본 논문에 대한
저작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그 행사를 제한하지 않는다. 본 저작권의 이양 동의서에
서명함으로써 저자(들)는 본 논문이 학술대회의 발표초록을 제외한 어떤 다른 형태로도
발간되지 않았으며, 또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음을
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. 본 저작권 이양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저자(들)가 본 저작권 이양
동의서에 기재된 모든 내용을 읽고, 그 내용을 이해하였으며, 전체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
의미한다.